

국가 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오지훈 의원)

의안 번호	2397
----------	------

발의년월일 : 2022. 1. 21.

발 의 자 : 오지훈, 방미숙, 강성삼,
김은영, 이영아, 정병용,
김낙주 의원

1. 주 문 : 별첨 “결의문” 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한국전쟁 이후 지뢰 및 불발탄 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생업과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나. 그러나, 지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고, 불발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전무한 실정임.

다. 현재 정부는 ‘재래식무기 사용금지협약(CCW)’ 에 가입한 상태로 지뢰뿐만 아니라 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라. 이에 하남시의회는 ‘국가 지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송부대상 : 대한민국 국회, 국방부

4. 붙 임 : 결의문 전문

국가지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한국전쟁 이후 지뢰 및 불발탄 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농사 등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지뢰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은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고, 불발탄으로 피해를 당한 민간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유엔의 ‘재래식무기 사용금지협약(CCW)’에 가입한 상태로 지뢰뿐만 아니라 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함께 보상해 주어야 한다.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을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희생한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수준에서 볼 때 당연한 과제이자 의무이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32만 하남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조속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조사, 지뢰 및 전쟁 잔류폭발물 등의 제거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 지뢰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지뢰 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하여 지뢰와 불발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2. 7.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